



#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1)

황현아 연구위원

- 2019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및 보험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 8건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 문제점, 향후 과제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봄
- ① 가동연한(2018다248909):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

  -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일일이익 산정 관련 약관 조항의 개정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됨
  - 향후 다른 직종의 가동연한 상향 및 정년 연장 등의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② 태아의 피보험자격(2016다211224):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태아를 피보험자로 명시하였다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질병도 보상대상에 포함됨

  - ‘태아보험’이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민원·분쟁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은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장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③ 보험사기 기수시기(2014도2754): 기망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함

  -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에 기수가 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보험계약사기’는 보험계약 체결 시(또는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었음
  - 대법원은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한 바, 보험계약사기의 구성요건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④ 직접청구권(2018다300708): 직접청구권의 법적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법원은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일반적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으로부터 곧바로 법원이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향후 재검토가 필요함

## 1. 검토배경



- 2019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산업 및 보험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당해 판결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과제 및 판례의 문제점 등을 제시해보고자 함
  - 대법원 판결은 향후 관련 법령 해석 및 실무 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그 내용 및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법원의 판단과 보험 실무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상 판결 8건 중 4건(1번~4번)은 이번 호에서 검토하고, 나머지 4건(5번~9번)은 다음 호에서 검토함
  -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i) 보험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판결(① 가동연한), (ii) 보험 관련 법령<sup>1)</sup>상 중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② 태아의 피보험자격, ③ 보험사기 기수시기), (iii) 보험약관 해석 및 보험금 지급 등 실무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거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판결(④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⑤ 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 해석과 명시·설명 의무, ⑥ 구상금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⑦ 손해 산정 시 기왕증 고려범위), (iv) 기타 보험법상 중요 이슈에 관한 판결(⑧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병명 미확인 건강이상 포함되는지 여부)을 선정하여 검토함

〈표 1〉 2019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구분	사건번호	쟁점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60세→65세)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격 인정
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보험금 수령 시)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임원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의 해석과 명시·설명 의무
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
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대인사고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 고려 범위
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 (병명미확인 건강이상 포함)

1) 상법 보험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임

## 2.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 (사건의 쟁점) 1989년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었으나, 30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그간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됨
  -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종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sup>2)</sup> 이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해 왔음
  - 가동연한은 사망·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일실회익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1989년 이후 변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1989년과 현재를 비교할 때, ①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늘어난 점, ② 경제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점, ③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점, ④ 우리나라의 실제 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 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점, ⑥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sup>3)</sup>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점, ⑦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고령자·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점, ⑧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인구고령화 판단 지표 기준이 되는 연령이 65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의의 및 영향)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약관 조항의 개정, 보험료 인상, 사무직 노동자 등 타 직종 가동연한 상향 문제 및 정년 연장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sup>4)</sup>
  - 위 판결 선고 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상향되었고,<sup>5)</sup> 이러한 개정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
  - 자동차보험 외에 다른 배상책임보험약관도 약관 개정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정년 연장 논의는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는 사항으로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이 문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3) 2013~2017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임

4) 황현아(2018. 12. 24),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상향의 쟁점 및 영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pp. 17~18

5) 금융감독원(2019. 4. 30),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 3.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격 인정



■ (사건의 쟁점) ‘태아보험’은 그 명칭 및 그로부터 야기된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해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민원·소송 등 분쟁이 야기되었음

-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된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장항목<sup>6)</sup>에 더하여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출생전후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함<sup>7)</sup>
-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출생 후의 신생아’이고 보장 기간도 가입 시점이 아닌 ‘출생 직후’부터 개시되는바, 출생 전 또는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이 발생함<sup>8)</sup>
-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보통약관 및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였음<sup>9)</sup>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등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데,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출생한 사람과 다르지 않으므로,

6)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임(금융감독원(2008. 6. 27), 「태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p. 2)

7) 금융감독원(2008. 6. 27), p. 2

8) 금융감독원은 ‘태아보험은 출생 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질환 및 인큐베이터비용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적 인격(人格)을 갖추지 못한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음’이라고 함으로써 태아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태아가 입은 ‘상해’가 보통약관, 상해후유장해특별약관 등의 보장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설명이 없었음(금융감독원(2008. 6. 27), p. 5)

한편, 태아보험 중 ‘출생전후기질환보장특약’은 태아나 산모에게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있고, ‘선천성질환수술특약’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연색체 이상으로 수술 시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질병·상해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는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 발생하는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태아 상태에서 입은 질병·상해 자체에 대해 정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9) 원고는 (i) 보통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 (ii) 상해후유장해(80% 이상)특별약관상 고도후유장해보험금, (iii) 상해후유장애(80% 이상, 수발보상)특별약관상 수발보상급여금, (iv)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별약관에 따른 의료사고법률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음. 피고 보험사는 당초 신생아질병입원일당특별약관, 질병통원실손의료비특별약관,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특별약관에 따라 약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보험계약자 측에서 태아가 상해 및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1억 2,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하였음

태아를 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고, 보장개시 시점도 출생 시가 아닌 1회 보험료 납부 시부터라고 판단함<sup>10)</sup>

■ (의의 및 영향)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적격이 인정되어 태아보험의 보장범위가 출생 전 태아의 질병·상해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태아보험의 상품구조 및 판매관행에 변화가 요구됨

-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적격’ 문제와 ‘민법상 법인격’의 문제를 구분하여, 태아가 민법상 법인격을 갖는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더라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함<sup>11)</sup>
-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으므로, (i) 향후 태아보험은 태아의 질병·상해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품을 재설계하거나, (ii) 그렇지 않을 경우 태아가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험계약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보장개시 시점을 출생 이후로 하는 상품의 경우 ‘태아보험’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보험 또는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4. 보험사기의 기수시기



■ (사건의 쟁점)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기수시

- 10) 참고로,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태아의 권리능력 문제와 결부되어 검토되어 왔음. 학계에서는 (i) 태아는 아직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도 될 수 없다고 보거나(김선정(2008), 「태아보험에 관한 검토」, 『보험법연구』, 보험법학회, p. 55), (ii) 태아가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음(박인호(2016), 「인보험 계약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 363; 김은경(2017), 「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보험학회지』, 제112집, 한국보험학회, pp. 28~29; 장덕조(201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영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상사법연구』, 제38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pp. 249~250). 즉,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음
- 11) 대상 판결 1심은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또한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면서, “인보험의 목적은 생명·신체의 보호에 있는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므로, 보험회사가 스스로 태아 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부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태아 상태인 자도 피보험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판결. 항소기각(2017나85322) 및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018다298652)으로 최종 확정됨)

점을 보험계약 체결 또는 확정 시로 볼 것인지, 보험금 수령 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됨

-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어느 시점에 사기죄 기수가 성립되는지가 문제됨
  -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위장하거나 과장 청구하는 ‘보험금사기’는 보험금 수령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나,<sup>12)</sup>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는 기수 시점이 불분명함
- 대상 판례 사안에서 A(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B(피보험자)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하여 기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면책기간 2년<sup>13)</sup>이 경과한 후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비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기죄로 기소됨<sup>14)</sup>
- 원심은,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sup>16)</sup>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된다고 보았음<sup>17)</sup>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험계약사기의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기수가 된다고 보았음

- 보험계약사기도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금사기와 보험계약사기 모두 보험금 수령 시에 보험사기 기수가 성립하게 됨

■ (의의 및 영향)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는 않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 대상 판결의 주된 쟁점은 보험사기의 기수시기이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기수시기 외에도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시기, 보험사기 유형별 범죄구성요건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됨<sup>18)</sup>

12) 한국사법행정학회(2017), 『주석형법』, 제2편 형법각칙, p. 91

13)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나(상법 제651조), 대상 판례사안의 보험약관상 해지권 행사기간은 그보다 짧은 2년이었음

14) 이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① 1999. 12. 3. 경 보험계약 체결 및 제1회 보험료 납부
- ② 2001. 12. 3. 경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기간(면책기간 2년) 도과
- ③ 2003. 5. 9. 경 법정추인 효과 발생(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기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됨)
- ④ 2002. 12. 6.부터 2012. 1. 6.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2천만 원 수령
- ⑤ 2012. 12. 28. 사기죄 공소제기

15) 참고로,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전에 발생하여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음

16) 본 사안의 경우 (i)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1999. 12. 3.), (ii)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2001. 12. 3.), 또는 늦어도 (iii)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2003. 5. 9.) 사기죄가 기수가 된다고 판단함

17) 학계에서는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i)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 (ii)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견해, (iii) 보험금 수령 시 기수가 된다는 견해 등이 있음(임용(2019), 『형법각론』, 제10정판, 법문사, p. 426)



- 관련 쟁점으로, 고의적 고지의무 위반 등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음<sup>19)</sup>
  -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망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sup>20)</sup>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형법의 조화로운 해석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양자의 요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의도된 것인지 입법상 오류로 인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약관과의 관계



-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sup>21)</sup>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도입된 것임<sup>22)</sup>
  -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sup>23)</sup>
  - 대상 판례 사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대상(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18) 이러한 쟁점을 분석한 논문으로, ‘최준혁(2019),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와 죄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법조』, 제68권, 제3호, 법조협회가 있음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20) 학계에서는, 보험금사기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때,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기망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임용(2019), p. 426).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사기의 경우 보험사고가 아닌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기망이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음(전지연(201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pp. 39~40)

21)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22) 『주석상법』 제4편 보험,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p. 261

23) 『주석상법』 제4편 보험,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pp. 262~263

20%를 초과할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을 근거로 시세하락손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임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약관상 지급기준의 구속을 받지 않는데,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시세하락손해 관련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은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위 약관 규정과 관계없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청구권의 성격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나 약관의 '지급기준'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봄
  -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관련 규정은 '책임 한도액'이 아닌 '지급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손해액 산정 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함

■ (비판적 검토) 직접청구권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별히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보험자 입장에서 직접청구권의 상대방이 됨으로 인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함<sup>24)</sup>
- 대법원은 시세하락손해 관련 약관 규정이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인정기준액' 부분은 지급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급대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책임 한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sup>25)</sup>
- 따라서 시세하락손해 관련 약관 규정을 단순히 지급기준으로 보아 직접청구권 행사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sup>26)</sup> **kiri**

24) 한기정(2018), 『보험법』 제2판, 박영사, p. 647

2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시세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26)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우 약관 자체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약관상 지급기준에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상 판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 아니라, 별도의 약관 규정에 의한 것임(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